

공시송달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제1항제5의2호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취소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 불명, 폐문부재등) 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5. 9. 14.

홍 천



1. 처분의 내용 : 개발행위허가 취소
2. 처분의 원인 :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허가기간 내 개발행위 미 완료
3. 처분의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4. 처분(개발행위허가 취소) 대상 : 붙임참조
5. 공고기간 : 2015. 9. 14. ~ 2015. 10. 5.(22일간)
6.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7.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홍천군 종합민원실 개발허가담당(☎033-430-2272)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홍천군수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의신청에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으며(심판청구서는 홍천군수 또는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가능함), 행정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춘천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청구, 사건 진행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붙임 허가내용 1부. 끝.

<붙임> 허가내용

번호	당 사 자		허 가 내 용			처분내용	비고
	성 명	주 소	위 치	용 도	면적 (㎡)		
1	고창복 고영진 강영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24길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물걸리 1411번지	단독주택 부지조성	660	개발행위 허가취소	
2	홍천산천마을 영농조합법인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야시대로383번길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야시대리 645번지	제2종근린생활 시설(제조업소 -농산물가공처 리시설) 부지조성	990	개발행위 허가취소	

